

‘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 안 번 호	765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 안 사 유

-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물(가칭 “시민의 종” 제작과 종각 축)을 제작하여 새천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역량을 결집하고 밝은 미래의 개척을 표명하며
- 각종 기념행사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안산의 자과 시민 화합의 구심체적 표상으로 삼고자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에 가칭 “시민의 종” 및 종각을 건립코자
- ‘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함.

□ 주 요 내 용

가. 취득재산 (1건)

1) 가칭 “시민의 종” 제작 및 종각 신축

-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새천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밝은 미래의 기척을 표명하며
- 각종 기념행사에 활용함으로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안산의 자랑과 시민 화합의 구심체적 표상으로 삼고자 함

□ 사업계획

- 위 치 : 초지동 667번지 화랑유원지내

- 사 업 내 용

- 종(鍾)제 작 : 11,250kg (3,000관 - 구리 + 아연)
- 종 각 전 립 : 50m² (15평)
- 기 타 : 조경 및 현판, 안내판 설치

□ 소요예산액 : 730,000천 원

- “종” 제작비 : 350,000천 원

- 종각 건립비 : 380,000천 원

□ 추진일정

- 공유재산취득심의

: '99. 4월 중

- 추진위원회 구성 : '99. 5월 중
- 종의 명칭·규모·문양결정 : '99. 5월 중
-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및 예산편성 : '99. 5월 중
- 종제작 및 종각공사 : '99. 7월 중 ~ 11월 한
- 타종시험 및 종설치 : '99. 12월 초
- 현판·안내판등 정비 : '99. 12월 초
- 새천년맞이 타종식 : '99. 12. 31 (24:00)

□ 주관부서의견 (총무과)

- 우리시는 시민화합의 구심체가 부족하여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도 공동체 건설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새천년을 뜻있게 맞이하는 미에서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상징물 제작의 필요성이 제 되어
- 시민의 기상과 원대한 미래의 포부를 담은 가칭 “시민의 종” 제작 “종”의 규모에 어울리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종각을 건립하고자 하며
- 새천년맞이 성대한 타종행사는 물론 각종 기념행사시 시민들의 편의 부대시설과의 조화등 지역여건과 관계법령등 검토결과 화랑유원지내 설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됨

□ 기대효과

- 새 천년의 시작을 축하하는 타종행사를 개최하여 시민의 역량을 결하고 밝은 미래의 개척을 표명
-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의 구심체적 표상

'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: 붙임

가. '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총괄표 (7-1)

나. '99년도 취득재산 목록 (7-2)

관계법령 발췌내용 : 붙임

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

'99년도 관리변경계획총괄표 (7-1)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건수	수 량	금 액	
취 득	계	토지 건물 기타	1	50	730,000				1	50	730,000
	1. 매 입	토지 건물 기타	1	50	730,000				1	50	730,000
	2. 교환으로 취 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3. 기타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처 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4. 매 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5. 양 여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 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계 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
'9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대상소유자 주소. 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계		1 건	50	730,000				
1	건물	초지동 667번지	50	730,000	'99. 12	시민의 종 제작 및 종각 신축	안산시	총무과

()

()

()

()

□ 관계법령 발췌내용

○ 지방자치법

-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○ 지방재정법
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- ②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
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의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시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)를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으로 한다.
 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)

○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

-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의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